

#### [서식 예]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

#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〈〉〈〉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대한민국

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■■■

(소관:○○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

#### 청구채권의 표시 : 금 ㅇㅇㅇㅇ원

1. 금 00000위

○○지방법원 20○○머○○○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 정정본에 기초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금

2. 금 ㅇㅇㅇㅇ원

위 제1항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.부터 20〇〇. 〇. 〇.까지 연 〇〇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3. 금 ○○○원(집행비용)

내역: 금 〇〇〇원(신청서 첩부인지대)

금 〇〇〇원(송달료)

금 ○○○원(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)

4. 합계 금 ㅇㅇㅇㅇ이원(1+2+3)



###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### 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머○○○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 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에 기초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나, 아 직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■■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에 의해 귀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갑 제1호증(배당표)와 같이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◈◆◈에게 금 ○○○원이 배당되었고(신청외 ◈◆◈에 대한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이 확정되었음) 그 금액 상당이 귀원에 공탁되어 있는바, 신청외 ◈◆◈는 위 경매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그전세보증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었고 이에 기해 20○○. ○. 귀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이자까지 전액 수령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{소갑 제2호증(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) 참조)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해제신청을 누락하는 바람에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권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. 따라서 채무자에 의해 신청외 ◈◆◈의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이 되어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(채무자가 현재 위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 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예정임) 위 공탁된 배당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신청외 ◈◆◈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별지목록



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한편, 대법원 1976. 2. 24. 선고 75다1596 판결에 의하면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바 있으므로 조건부채권인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.

3. 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귀원 20〇〇머〇〇〇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정본에 기초하여 별지목록 기 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.

### 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배당표

1.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### 첨부서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정본 1통

1. 송달증명원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[별 지]

#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

### 금 ㅇㅇㅇ원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 ◈◆◆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는 경우채무자에게 귀속될 위 가압류권자 ◈◆◆에 대한 배당액 금 ○○○원 상당의 지급청구권임. 끝.

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29조제1항
제출부수	출부수 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
불복절차	불복절차 ・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, 제229조제6항)		
및 기간	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
비용	·인지액: 4,000원 (압류 2,000원 + 전부 2,000원)		
<sup> </sup>	·송달료: 당사자수(채권자, 채무자, 제3채무자)×○○○원(우편료)×2회분		
기 타	·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,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.		



- ·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, (1)집 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,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, (2)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).
- ·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,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72589 판결).
- ·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).
- ·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,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,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,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(대법원 2002, 9, 24, 선고 2002다27910 판결).
- ·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,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 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(대법원 2002, 8, 27, 선고 2001다71699 판결).
- ·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,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,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(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)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(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).

### 참고판례요지



### 참고판례요지

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,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.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파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파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파압류체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파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파압류계외 비교할 것은 아남(대법원 2002, 7, 26, 선고 2001다68839 판결).

#### ※ 제출법원{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}

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